

2023년 법인세 신고실무 (저자 : 배택현) 정정사항 안내

1. 당초 교재 내용 (페이지 408. 하단)

※4. (청년등 인원 감소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유지·증가한 경우)

구분	2020	2021	2022	증감	2022 1차연도	2021 2차연도	계산근거
상시	3	8	10	+2			
청년등	2	5	2	-3	0	1200만원 추가납부	3명 × (1100 - 700)
청년외	1	3	8	+5	1400만원	1400만원 추가공제	5명 × 700만원

(당초 청년외 공제2명 받았으므로 2명×700만원 2차연도 공제한다.)

2021년 2차연도 : 상시인원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 인원 감소하였으므로 청년등 추가공제 없으며, 청년등 감소 인원 3명에 대해 공제차액 (청년등 1100- 청년외 700)×3=1200만원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시인원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청년외 공제인원 2명에 대하여 1400만원 추가공제 받는다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 제1호 나목 (407페이지 사례 1-3 참고)

(청년등 인원 감소하였으나 상시 인원 감소하지 않았을 때, 입사할 때 청년이었으나 나이가 들므로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사후관리에서는 계속청년으로 보고 재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청년등의 감소가 나오면 청년등 감소인원에 대해서는 청년등과 청년외 공제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당초 공제받은 청년등 인원을 전부 청년외 인원으로 합하여 추가공제 합니다. 그러나 이계산은 현재 국세청이 세법을 단순하게 과세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청년외 2차연도 추가공제를 당초 공제받은 2명에 대해서만 1400만원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모순이 있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사전법령해석2022-0343 2022. 10. 13)

2. 정정내용

2021년 2차연도 : 청년등 인원이 감소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유지·증가한 경우 청년감소 인원 에 대해서 감소인원 × (청년등공제액 - 청년외공제액)으로 계산하여 추가납부하며 이때 감소한 청년등 인원은 청년외 인원으로 가산하여 청년외 공제는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당초 저자가 주장한 내용을 국세청 예규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획재정부 예규에서는 인정한 내용입니다.

※4. (청년등 인원 감소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유지·증가한 경우)

구분	2020	2021	2022	증감	2022 1차연도	2021 2차연도	계산근거
상시	3	8	10	+2			
청년등	2	5	2	-3	0	1200만원 추가납부	3명 × (1100 - 700)
청년외	1	3	8	+5	1400만원	3500만원 추가공제	5명 × 700만원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14 2023.03.0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 (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 제1항 제2호 (청년외 공제)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